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65호 2022. 1. 25.(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502호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3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4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
- 하동군 규칙 제1248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1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78호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46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2-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53
- 하동군 고시 제2022-10호 공유수면 점용 변경 허가고시(화개**타운 주식회사)·····55
- 하동군 고시 제2022-14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55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2-7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6
- 하동군 공고 제2022-86호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64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0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71
- 하동군 공고 제2022-114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공표 72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2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502 호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하동군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회원 10명 이상 및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4.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로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하 “경로당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 등의 운영 실태조사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시설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 2. 경로당 냉·난방비
 -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
 - 4. 신축·증축·개축 및 기능보강 사업비
 - 5. 경로당 환경개선비
 - 6.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관리기구 설치·유지관리비
 - 7. 그 밖에 경로당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②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마을회관 지원) 군수는 마을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1. 개축
 - 가. 건립연수 25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경우.
 - 나. 건립연수 25년 미만이라도 정부로부터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2. 개보수 및 기능보강
 - 가. 리모델링 : 건물 또는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긴급보수 :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시설물 :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정산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마을회, 노인회)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한 후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주민들이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로당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경로당 등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2.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8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2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47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개정2022. 1. 25.>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713	355	77	71	13	23	174
정 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일반직 계		682	351	77	46	11	23	174
	4급 소계		5	4	1				
	서기관·기술서기관		5	4	1				
	5급 소계		40	18	2	5	2	1	12
	행정		4	3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무·의료기술·간호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6	6					
	행정·농업		3	1					2
	행정·사회복지·농업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시설		4	1				1	2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4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보좌기관포함)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6급 소계		184	98	16	11	3	5	51
	행정		9	9					
	세무		1	1					
	속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6	6					
	운전		4			1			3
	행정·세무		16	10	1			1	4
	행정·사회복지		10	6				1	3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21	6		4		1	10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20	18					2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2	1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6						6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3
	행정·세무·농업		8	3					5
	행정·세무·시설		6	5			1		
	행정·세무·전산·농업		5	3			1		1
	행정·전산·농업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7	3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간호		7		4				3
	행정·시설·환경		3	3					
	행정·해양수산·보건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식품위생		4		4					
행정·공업·환경·시설		5	5						
행정·농업·녹지·환경		4	2					2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보좌기 관포함)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7급 소계		192	98	19	11	4	9	51
	행정		20	14		1	2	1	2
	세무		1	1					
	전산		1	1					
	사회복지		9	2				1	6
	숙기		1				1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시설		16	10		1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수의		2			2			
	운전		11	3	2			2	4
	행정·세무		7	5					2
	행정·사회복지		7	6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9	6		1		2	10
	행정·시설		16	12					4
	행정·환경		2	2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보건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수의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2						2
	행정·세무·시설·방재안전		5	2			1		2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4	1		1			2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3	1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보건·환경		3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통신운영		3	2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8급 소계		173	85	35	5	2	3	43
	행정		20	13			2		5
	세무		1	1					
	사회복지		11	4				1	6
	행정·농업·방호		1			1			
	공업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2	2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12	7					5
	행정·세무·농업·시설관리		2	2					
	운전		6	1					5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시설		10	5				1	4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9	2		2			5
	행정·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		4	2					2
	행정·시설		13	13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5	5					
	농업·녹지		5	5					
	행정·보건·간호		6	1	5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6	2					4
	행정·농업·시설		9	5		1			3
	행정·보건·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3	3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6		3			1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9급 소계		88	48	4	14	0	5	17
	행정		12	6		2		2	2
	사회복지		13	5				1	7
	환경		2	2					
	공업		4	4					
	해양수산		1	1					
	보건		1	1					
	운전		2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4	2				1	1
	행정·농업		6	2		3			1
	행정·시설·방호		11	9		2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		4			4			
	보건·간호		2		2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전산·통신		4	3		1			
	행정·세무·시설		3	3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5	2		2			1
행정·환경·시설·방재안전		4	3					1	
보건·의료기술·간호·식품위생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별 정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의회전문위원		1				1		
	비서		1	1					
연 구 지 도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2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48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군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이전보조금”이란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

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7.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나. 같은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 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8.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9.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10.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3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11.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별지 서식 제8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12.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하동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및 협의회)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 및 투자유치협의회위원(이하 “협의회위원”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관련 분야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중앙 및 도의 투자유치전문 공무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등 그 밖의 경비

⑤ 군수는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이 위촉 해제를 요청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⑥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기금용자 대상 등) ① 조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단, 대송산업단지의 준공 전 분양계약하는 기업에 한하여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1. 용자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갈사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에 한하여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용자대상 업종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3. 용자한도는 공장시설 등 부지 매입금액의 60퍼센트 이내에서 100억원
4.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

② 제1항에 따른 공장부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 등 부지 매입을 위하여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② 기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10조에 따라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입지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기업당 3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개월의 기간에서 10명을 초과한 1명 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해당되는 시설을 건립하는 때에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이내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비용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에 한정하되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투자금액이 100분의 10이상의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 지급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확정 후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금액 중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예산평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건설부문의 기본조사설계비의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 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지정지구 내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16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5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시설 등록에 따른 사업개시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7조(신·증설 기업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증설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것
2.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6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단, 국내에서 연속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기업 당 30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도외 기업의 본점 등 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24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군의 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사업장 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00실 이상의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2.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성화업종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 5. 그 밖에 시설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또는 연구소·연구개발업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

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은 제9조를 준용하고 시설보조금의 지원은 10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시설보조금과 입지보조금은 각각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분양계약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시설보조금의 경우 착공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시설 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증설한 경우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주기업의 요청 시 입지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특성화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76,61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첨단업종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63,84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입지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송산업단지 준공 이전 입주기업에 한해서는 착공 시 지원금액 결정액 중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4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군내인력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군내인력 고용보조금은 신규 투자로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공장등록날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주민등록상 군민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기간에서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10명 이내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이전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

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4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4의2와 같이 하며,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내역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등

③ 조례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및 군도 일 것
2. 상·하수도시설: 경제자유구역 안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

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지역난방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7.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3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와의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제한)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과 입지지원의 경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계획 금액을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서 제출 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4. 그 밖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4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2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35조제1항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지지원 또는 시설지원을 받아 공장시설 등을 등록한 후 제2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 나. 매입한 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 다.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용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4.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어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5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26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의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제1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9조(융자금의 상환) ①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균등 배분

하여 상환한다.

②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융자금 조기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 취급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대출 상환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더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 또는 기업자금 평균금리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서 부담한다.

⑤ 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제1항제3호,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 제1항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제30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등)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초 투자 날부터 5년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희망보직 배치,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원기준은 별표를 따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투자유치자문관, 컨설팅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유치 성과급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수소산업의 해당여부를 수소관련 전문가 단체·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0조제3항의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별표 2와 같고, 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시 기업이 투자한 토지구입비 인정액은 토지구입비 이외의 투자인정액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투자유치 포상 기준

구 분	기 준				
포상대상	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				
포상종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포상금 산정액 (①)	유치구분	투자규모	성 과 금	상한액	
	투자금액 (민간인, 기관단체)	50억원 ~ 100억원	투자금액 × 0.001(0.1%)	1,000만원	
		100억원 초과 ~ 500억원	(투자금액-100억원) × 0.0004(0.04%) + 1,000만원	2,600만원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투자금액-500억원) × 0.0003(0.03%) + 2,600만원	4,100만원	
		1,000억원 초과	(투자금액-1,000억원) × 0.0002(0.02%) + 4,100만원	2억원	
	투자금액 (공무원)	50억원 ~ 100억원	투자금액 × 0.0005(0.05%)	500만원	
		100억원 초과 ~ 500억원	(투자금액-100억원) × 0.00004(0.004%)	1,600만원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투자금액-500억원) × 0.00003(0.003%) + 500만원	2,000만원	
		1,000억원 초과	(투자금액-1,000억원) × 0.00002(0.002%) - 5,900만원	1억원	
	포상금 적용율 (②)	적용율	적 용 대 상		
		10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3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후 주관부서로 이관 추진			
비 고	○포상금 지급액 = 산정액(× 적용율(③))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외국인투자는 미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 ○모든 포상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별표 2]

수소산업 투자 규모별 보조금 지원한도

투자규모 (투자인정액-10억)	지 원 한 도
25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 100억원 이하
15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별표 3]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구분	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 구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4]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

① 최근 2~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2~3년간 매출액 증가율	점 수	최근 2~3년간 매출액 증가율	점 수
35% 이상	5	5% 이상 ~ 15% 미만	2
25% 이상 ~ 35% 미만	4	5% 미만	1
15% 이상 ~ 25% 미만	3		

-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 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매출액 증가율} \times 1)}{3}$
- * 당기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 - \text{전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 * 전기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전기 매출액} - \text{전전기 매출액}}{\text{전전기 매출액}} \times 100$
- ※ 영업 3년 미만의 기업은 2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증가율)로 산정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② 최근 2~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최근 2~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점 수	최근 2~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점 수
35% 이상	5	5% 이상 ~ 15% 미만	2
25% 이상 ~ 35% 미만	4	5% 미만	1
15% 이상 ~ 25% 미만	3		

- *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 $\frac{(\text{당기 영업이익 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영업이익 증가율} \times 1)}{3}$
- * 당기 영업이익 증가율 = $\frac{\text{당기 영업이익} - \text{전기 영업이익}}{|\text{전기 영업이익}|} \times 100$
- * 전기 영업이익 증가율 = $\frac{\text{전기 영업이익} - \text{전전기 영업이익}}{|\text{전전기 영업이익}|} \times 100$
- ※ 영업 3년 미만의 기업은 2년간 영업이익 증가율(당기 영업이익 증가율)로 산정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③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20명 이상 30명 미만	4
40명 이상 50명 미만	8	10명 이상 20명 미만	2
30명 이상 40명 미만	6		

④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⑤ 이자보상배율

최근 2~3년 이자보상배율	점 수	최근 2~3년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10	1 이상 ~ 2 미만	4
3 이상 ~ 4 미만	8	1 미만	2
2 이상 ~ 3 미만	6		

* 최근3년 이자보상배율

$$= \frac{(\text{직전1년 이자보상배율} \times 3) + (\text{직전2년도 } " \times 2) + (\text{직전3년도 } " \times 1)}{6}$$

* 최근2년 이자보상배율(영업3년미만 기업)

$$= \frac{(\text{직전1년 이자보상배율} \times 2) + (\text{직전2년도 } " \times 1)}{3}$$

*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 $\frac{\text{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text{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⑥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⑦ 사업성 분석

사업성	점 수	사업성	점 수
20% < (IRR-할인률)	5	5% < (IRR-할인률) ≤ 10%	2
15% < (IRR-할인률) ≤ 20%	4	(IRR-할인률) ≤ 5%	1
10% < (IRR-할인률) ≤ 15%	3		

⑧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5	2.5년 이내	2
1.5년 이내	4	3년 이내	1
2년 이내	3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
 *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기산

⑨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신규 고용하면 5점 가점

⑩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투자 여부 : 2점

[별표 4의2]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56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70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100		1,000억원 미만 해당

[별표 5]

보조금 환수 기준

구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규칙 제30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4호, 제9호)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규칙 제30조제1항제6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하동군수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규칙 제30조제1항제7호) <p>(1)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환수액 = 보조금 × (1 - 평균달성률)</p> <p>*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 달성률의 합 / 사업이행기간</p> <p>* 고용인원달성률 = 연평균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p> </div> <p>※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시 :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시 :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p>※ <u>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u></p> <p>(2)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내 휴·폐업(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표 6]

신설·증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평균매출액	점 수
100억원 이상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	30억원 미만	4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12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2.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점수
30명 이상	20

3.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CCC- 이상	8
BB- 이상	16	CCC-미만	4
B0 이상	12		

※ 용자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20	1 이상 ~ 2 미만	8
3 이상 ~ 4 미만	16	1 미만	4
2 이상 ~ 3 미만	12		

* 이자보상배율 = $\frac{\text{기업의 영업 이익액}}{\text{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5.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20억원당 2점

6.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5년 이내	10	2.5년 이내	6
2년 이내	8	3년 이내	4

7.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점수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	1명당 0.5점

※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 인원이 경상남도 출생지를 둔 청년 신규고용인 경우 1명당 0.5점 추가 가점부여
 - 청년이란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5세~34세를 의미

8.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별표 7]

신설·증설기업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신설·증설 기업지원	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 10%	10	설비투자금액 15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1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2명 이상		15	설비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5명 이상		20	설비투자금액 25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2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8명 이상		25	설비투자금액 30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30	

[별표 8]

기금 용자 타당성 평가표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6
3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2.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25명 이상	20명 이상	15
20명 이상 2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9
10명 이상 1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6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3

년·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년·월										
상시고용인원										

3.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BB- 이상	16
B0 이상	12
CCC- 이상	8
CCC-미만	4

※ 용자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20
3 이상 ~ 4 미만	16
2 이상 ~ 3 미만	12
1 이상 ~ 2 미만	8
1 미만	4

* 이자보상배율 = $\frac{\text{기업의 영업 이익액}}{\text{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5.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6.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7.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가점(10점 상한)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신청당시 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8.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

[뒷 면]

보조(융자)금액	보조금(융자금) 총액		도비 분담금		시·군비 분담금	
	계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산출식					
	OO 보조금					
	OO 보조금					
	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있음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고용인센티브(%p)

기 지원사항

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총액	천원
		국비	천원
		도비	천원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신설·증설 기업 지원,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협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협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소(법인소재지)		전 화 번 호		
			F A X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 <input type="checkbox"/> 주 택 <input type="checkbox"/> 지원시설				
	소 재 지				
	면 적	부 지	건 축 물		
		m ²		m ²	
	건 물 구 조				
	건축허가일	준공일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신 축 <input type="checkbox"/>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	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	주택 :	원	지원시설 :	원
<p>「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p>					
하 동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별지 제4호서식]

군내 인력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청 기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팩스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업 종	
	보조금신청 횟수	회	신규 투자규모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 월평균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월평균인원	
	지원 신청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근무인원)	총 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액	보조금	총금액 :	원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 여) (인) 하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1부 2.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조회 신청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도외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구분		투자계획 기준	정산기준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신규 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일부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사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사 업 (투 자) 계 획 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 (인)

대 표 자 :

귀사에서 제출한 일체의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

□ 투자기업 개요

기업체명		대표자	
설립일자		법인(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없음	건설업명	
회 사 소 개			

산 업 분 석

--

□ 생산공정도

생산공정도	생산공장 요약 설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30px;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30px;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30px;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30px;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30px;"></div>	

투자 설비 내역서

품명	규격(용량)	내용년수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용도)

투자의 개요

기존 사업장 주소	본사						소유 / 임차
	공장						소유 / 임차
	연구소						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							소유 / 임차
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 m ²)							
구 분		부지			건물용지		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		계		N	N + 1	N + 2	N + 3
계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	소계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투자의 사유

자금조달 계획

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							
투자금액	자기자본		외부조달		계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참고사항							
부채비율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순유동자산 (A-B)		

고용 계획

고용계획(단위 : 명)						
구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투자 후(A+B)
		N* *신청년도	N+1	N+2	N+3	
계						
연구·개발						
사무·영업						
생산						
고용사유						
연구·개발직						
사무·영업직						
생산직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영업 이익	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N*+1 *사업개시일	N+2	N+3	N+4	N+5	N+6	N+7	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	매출액				%		영업이익		%	
사업성 전망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2022년 1월 2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78 호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2022 - 9호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14.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97-24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0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097-7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58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97-24	20220114		20070618	진교의 연원(淵源) 을 적용하여 민다리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484-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120	20220114		20080402	옥종면의 중심도로로서 옥종중앙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2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48-1	20220114		20080402	미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021-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670-50	20220114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480-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향로 754-7	20220114		20090702	동향전적지인 고성산 지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229-1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91-6	20220114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등읍 목도리 306-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등읍 목도1길 63	20220114		20090302	목도라는 자연마을이름을 사용하여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탐리 713-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9-3	20220114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안삼리 산57-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06	20220114		20090702	예전의 고속도로 기념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188-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63-10	20220114		20070618	염등만수 정자 숲의 서쪽 마을에서 유래된 정서리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097-7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097-7	20110729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097-7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097-13	20220114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 - 1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01. 14.

하 동 군 수

- 1. 허가(승인)번호 : 2021-11호
- 2. 허가연월일 : 2021. 3. 18.
- 3. 점·사용의 목적 : 근린생활시설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865-2(12㎡), 865-8(1㎡), 865-9(4㎡)
- 5. 점·사용의 기간 : 2021. 3. 18. ~ 2021. 3. 17.
-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 김정*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1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1. 18.

하 동 군 수

- 1. 허가(승인)번호 : 2022-6호
- 2. 허가연월일 : 2022. 1. 18.
- 3. 점·사용의 목적 :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콘크리트포장
-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617번지, 20㎡
- 5. 점·사용의 기간 : 2022. 01. 18. ~ 2026. 01. 17.
-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산복*길 *, 전주*

하동군 공고 제2022- 7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 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22.1.27.)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필요에 따라 사전에 정원을 조정하여 중대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 ※ 변동사항 없음
 - 3국, 17과, 2직속기관(보건소 2과, 기술센터 4과), 1보좌기관, 1의회, 13개 읍·면
 - 직제개편 <167담당> ※ 변동사항 없음
 - 본청담당 : 82담당 → 82담당
 - ※ 중대재해예방팀 TF팀(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 직속기관 : 29담당
 - 보좌기관 : 2담당
 - 의회사무과 : 1담당
 - 읍 면 : 53담당
 - 정원조정
 - 현 정원 : 713명 ※ 변동사항 없음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하동군 기획행정국 행정과(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53, FAX 880-2159, e-mail : hur4444@korea.kr)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개정 2022. 1. .>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713	355	77	71	13	23	174
정 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일반직 계		682	351	77	46	11	23	174
	4급 소계		5	4	1				
	서기관·기술서기관		5	4	1				
	5급 소계		40	18	2	5	2	1	12
	행정		4	3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 호		1		1				
	보건·의무·의료기술·간 호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6	6					
	행정·농업		3	1					2
	행정·사회복지·농업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시설		4	1				1	2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4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보좌기관포함)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6급 소계		184	98	16	11	3	5	51
	행정		9	9					
	세무		1	1					
	속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6	6					
	운전		4			1			3
	행정·세무		16	10	1			1	4
	행정·사회복지		10	6				1	3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21	6		4		1	10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20	18					2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2	1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6						6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3
	행정·세무·농업		8	3					5
	행정·세무·시설		6	5			1		
	행정·세무·전산·농업		5	3			1		1
	행정·전산·농업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7	3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간호		7		4				3
	행정·시설·환경		3	3					
	행정·해양수산·보건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식품위생		4		4					
행정·공업·환경·시설		5	5						
행정·농업·녹지·환경		4	2					2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보좌기 관포함)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7급 소계		192	98	19	11	4	9	51
	행정		20	14		1	2	1	2
	세무		1	1					
	전산		1	1					
	사회복지		9	2				1	6
	숙기		1				1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시설		16	10		1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수의		2			2			
	운전		11	3	2			2	4
	행정·세무		7	5					2
	행정·사회복지		7	6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9	6		1		2	10
	행정·시설		16	12					4
	행정·환경		2	2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보건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수의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2						2
	행정·세무·시설·방재안전		5	2			1		2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4	1		1			2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3	1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보건·환경		3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통신운영		3	2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8급 소계		173	85	35	5	2	3	43
	행정		20	13			2		5
	세무		1	1					
	사회복지		11	4				1	6
	행정·농업·방호		1			1			
	공업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2	2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12	7					5
	행정·세무·농업·시설관리		2	2					
	운전		6	1					5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시설		10	5				1	4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9	2		2			5
	행정·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		4	2					2
	행정·시설		13	13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5	5					
	농업·녹지		5	5					
	행정·보건·간호		6	1	5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6	2					4
	행정·농업·시설		9	5		1			3
	행정·보건·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3	3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6		3			1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9급 소계		88	48	4	14	0	5	17
	행정		12	6		2		2	2
	사회복지		13	5				1	7
	환경		2	2					
	공업		4	4					
	해양수산		1	1					
	보건		1	1					
	운전		2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4	2				1	1
	행정·농업		6	2		3			1
	행정·시설·방호		11	9		2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		4			4			
	보건·간호		2		2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전산·통신		4	3		1			
	행정·세무·시설		3	3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5	2		2			1
행정·환경·시설·방재안전		4	3					1	
보건·의료기술·간호·식품위생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별 정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의회전문위원		1				1		
	비서		1	1					
연 구 지 도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별지】

입법에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훈령 제2022-86호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2 - 102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7.

하 동 군 수

- 1. 등록 및 폐기일 : 2022. 1. 17.
- 2. 등록 및 폐기사유 : 조직개편
- 3. 등록 및 폐기공인

구분	공 인 명	글씨체 및 규격	인영	비고
등록	하동군 산단개발과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구분	공 인 명	글씨체 및 규격	인영	비고
폐기	하동군 산단조성과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하동군 산단조성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하동군 공고 제2022-114호

하동군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비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39,387	39,363	24	1,969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2022년 1월 1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2-114호

하동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군 수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15/100 산정수	
계	39,387		5,908	4개 이상 읍·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하동읍	8,430	394		
화개면	2,785	394		
악양면	3,240	394		
적량면	1,792	269		
횡천면	1,714	257		
고전면	2,033	305		
금남면	3,171	394		
금성면	2,711	394		
진교면	5,199	394		
양보면	1,631	245		
북천면	1,553	233		
청암면	1,270	191		
옥종면	3,858	394		

■ **군의원**

(단위 : 명)

지 역 선거구	읍면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20/100 산정수	
가선거구	계	7,817		1,563	각 읍·면별로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화개면	2,785	78		
	악양면	3,240	78		
	적량면	1,792	78		
나선거구	계	12,177		2,435	각 면별로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하동읍	8,430	122		
	횡천면	1,714	122		
	고전면	2,033	122		
다선거구	계	11,081		2,216	1개 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 아야 함
	금남면	3,171	111		
	금성면	2,711	111		
	진교면	5,199	111		
라선거구	계	8,312		1,662	1개 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 아야 함
	양보면	1,631	83		
	북천면	1,553	83		
	청암면	1,270	83		
	옥종면	3,858	83		

2022년 1월 1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2-114호

하동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군 수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15/100 산정수	
계	39,387		5,908	4개 이상 읍·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하동읍	8,430	394		
화개면	2,785	394		
악양면	3,240	394		
적량면	1,792	269		
횡천면	1,714	257		
고전면	2,033	305		
금남면	3,171	394		
금성면	2,711	394		
진교면	5,199	394		
양보면	1,631	245		
북천면	1,553	233		
청암면	1,270	191		
옥종면	3,858	394		

■ 군의원

(단위 : 명)

지 역 선거구	읍면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20/100 산정수	
가선거구	계	7,817		1,563	각 읍·면별로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화개면	2,785	78		
	악양면	3,240	78		
	적량면	1,792	78		
나선거구	계	12,177		2,435	각 면별로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하동읍	8,430	122		
	횡천면	1,714	122		
	고전면	2,033	122		
다선거구	계	11,081		2,216	1개 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 아야 함
	금남면	3,171	111		
	금성면	2,711	111		
	진교면	5,199	111		
라선거구	계	8,312		1,662	1개 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 아야 함
	양보면	1,631	83		
	북천면	1,553	83		
	청암면	1,270	83		
	옥종면	3,858	83		

2022년 1월 19일

하 동 군 수